

[사법농단 ISSUE PAPER ⑦]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2018. 7. 10. (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목차>**

### **1. 들어가며**

###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이른바 ‘디가우징’에 대하여

나. 사안의 개요

다. 법원행정처 해명 및 그 부당성

### **3.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관련**

가. 사안의 개요

나. 김민수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평가

### **4. 결론**

# 사법농단 사태 관련

##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 1. 들어가며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의 협조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증거를 수집하는 데 그치는 등 그 속도는 매우 더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과거 재임 기간 중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퇴임 이후 ‘디가우징’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이유로 검찰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특조단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김민수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당일 새벽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24,500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은 대체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 대다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및 위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등은 사법농단 사태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위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및 파일 삭제 행위등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행정처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 해명의 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본다.

##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 가. 이른바 ‘디가우징’에 대하여

디가우징(degaussing)이란, 통상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포렌식 등의 기술적 복원 방식을 통해 파일 등 자료를 되살릴 수 있다. 그러나 디가우징은 디가우저라는 장치에 하드디스크를 넣은 후 강력한 자기장에 노출시켜 하드디스크 자체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더라도 복원할 수 없는 것이다.

디가우징이라는 용어가 사회에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10년경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다.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으로 근무했던 장진수는,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최종석의 지시로 위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하였다. 이후 위 장진수는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어,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주요한 문건 작성 도구로 활용된 만큼, 디가우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디가우징은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 롯데 그룹 비자금 사건 등 여러 형사 사건에서 증거인멸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 나. 사안의 개요

검찰은 2018. 6. 26.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

징’ 방식을 통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튿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디가우징은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위 디가우징의 경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관련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답변하였다. 즉,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완전히 소거조치”를 해야 하며, 종전 퇴임한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거조치를 해왔다는 것이다.

#### 다. 법원행정처 해명 및 그 부당성

1)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임의로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는데,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2)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국가의 소유이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작성 공무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기록이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이 대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호·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거이다. 여기서의 ‘기록물’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호). 공공기록물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정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또한 “각급 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8조).

대법관 이상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정보는 완전히 소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령의 요구는 ‘공식적으로 결재·접수한 기록물’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정보는 ‘직무의 특성’ 때문에 모두 완전히 소거한 것이라면 이는 공공기록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공공기록물법 제50조 제1호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들 기록물은 반드시 남겨 관리했어야 하며, 그렇게 관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한 행정예규에 불과한 “전산관리운영지침”이 이러한 ‘공공기록물’을 소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 지침 자체가 상위 법률인 공공기록물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 3) 사건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사법농단·재판거래 관련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의 일반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수사기관’이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혐의자들이 근무했던 법원행정처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사건 관련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관계인들이 형사재판절차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판결을 하면서 당연한 전제로 여겨왔던 것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금 시점에서 범죄행위 혐의를 받는 조직 스스로가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료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감추려 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져올 뿐이다.

- 4) ‘공무상 비밀’이라는 사유가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될 수는 없다.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모두 ‘공무상 비밀’이었다. 이미 공개가 된 자료들 중에도 문건 자체에 이미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었다. ‘공무상 비밀’인 자료를 공개한

법원행정처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자료(하드디스크 원본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의 흔적이 있고 복구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 하드디스크 원본 자체에 대한 압수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왔다. 실제로 ‘사건 관련성’이 없고 ‘공무상 비밀’인 자료들이 있다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을 준용하여, 검찰에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개별 파일마다 소명을 하여 수사대상 자료에서 제외시키면 족한 것이지, 자료 전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5) 한편 최근 언론 보도<sup>1)</sup>에 의하면, 최근에 퇴임한 박보영 대법관 등의 경우 재임 중 사용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행위가 규정 또는 관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6) 무엇보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된 것은 2017. 10. 31.인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2017. 9. 22.)한 후 한 달도 더 지난 시기이며,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sup>2)</sup>하기 불과 3일 전이다. 이와 같이 민감한 시기에, 법률 규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확립된 관례도 아닌 디가우징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 3.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관련

---

1) 2018. 7. 5.자 JTBC, <썰전>

2)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한 것은 2017. 11. 3.이다.

## 가. 사안의 개요

김민수 부장판사는 2015. 2.부터 2016. 2.까지 법원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 2016. 2.부터 2017. 2.까지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을 역임한 법관으로, 심의관 재임 당시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다가, 특조단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김민수 당시 심의관은 인사이동 당일이었던 2017. 2. 20. 06:52부터 08:00까지, 인수인계할 파일을 추려낸 이후 24,50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주목했던 암호 파일도 삭제되었는데, 그 파일명은 ① 인사모 관련 검토, ②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③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등이다.

## 나. 김민수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평가

- 1) 형법 제141조는 공용서류무효죄와 관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김민수 전 심의관은 인수인계할 파일을 추려낸 후 나머지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민수 전 심의관이 위와 같이 파일을 삭제한 시기에는 이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관련 문건의 존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점, 삭제된 파일에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는 파일들(인사모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 통상 인수인계 대상에서 제외할 파일들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파일들이라 할 것인데 위 파일들은 파일명만 보더라도 그 개인적

파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임자로서 인수인계할 파일을 선정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 삭제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 2)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행태가 직권남용 등 형사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민변 사법농단 T/F가 발간한 다수의 이슈리포트의 내용으로 같음하기로 한다. 나아가 특조단의 조사보고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민수 전 심의관은 임종현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다가 본인의 인사이동 시기에 맞추어 다수의 파일을 삭제한 것인바, 앞서 살펴본 대로 김민수 심의관이 파일 삭제를 한 시기, 삭제한 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일 삭제 행위는 직권남용죄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 4.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및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는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위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어 위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정다주 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

법원장의 대국민담화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대로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협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강제수사 등 보다 능동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하여야 한다. 시간이 늦추어 질수록, 증거인멸의 속도와 범위는 더욱 빨라지고 넓어질 것이다. 진실이 다가우징 되기 전에, 진실이 삭제되기 전에.